지도자훈련 운영 규정

(제26차 개정 2022. 4.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지도자에게 헌장 제15조의 자격을 구비케 하기 위하여 중앙본부 및 지방·특수연맹이 시행하는 각급 지도자 훈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11. 13.)

제2조(업무의 관장) 훈련업무는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의 책임 하에 중앙훈련원 및 각 지방·특수연맹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 3. 14.)
다만, 지방·특수연맹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상급과정, 전문과정, 특별과정을 중앙훈련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제3조(훈련의 종별) 지도자 훈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도자 훈련
   지도자 훈련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상급과정으로 구분한다.
2. 훈련팀 훈련
   훈련팀 훈련은 지도자훈련의 강사 양성과정으로 부교수과정과 교수과정으로 구분한다.
3. 전문과정
   전문과정은 지도자들의 직책과 직능에 따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커미셔너과정, 종별과정, 종별 강사과정, 재훈련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4. 특별과정 (개정 17. 12. 14.)
   특별과정은 대상이나 훈련운영 형식에 따라 대학교과과정, 교원 직무연수과정, 경영자과정, 입문과정, 병합과정, 분할과정, 사이버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훈련의 기준) 각급 훈련의 기준과 훈련내용은 세계연맹 및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성인인력정책에 따라 중앙본부가 제정한 각급 훈련팀 교범(프로그램)에 의하여 코스대장 책임 하에 그 수준을 유지한다. (개정 06. 12. 12.)

제5조(훈련강사의 구성) (개정 06. 12. 12.)

1. 훈련강사의 구분
   훈련강사는 훈련 전 기간 봉사하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2. 훈련강사의 선정
   가. 중앙훈련원 개설 훈련
   (1) 코스대장 :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의 책임 하에 선정한다. (개정 20.

3. 14.)

(2) 부대장 및 강사 : 코스대장과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 3. 14.)

나.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 개설 훈련 (개정 09. 11. 13.)

(1) 코스대장 :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와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장 및 훈련 담당 커미셔너(지구연합회 치프커미셔너)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2. 4. 28.)

(2) 부대장 및 강사 : 코스대장과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지구연합회 치프커미셔너),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장 및 훈련 담당 커미셔너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2. 4. 28.)

3. 훈련강사의 자격

훈련강사의 자격은 별표1에 정한다(개정 06. 12. 12.)

제6조(훈련의 개설 승인 및 통보) 지도자 훈련은 중앙훈련원과 지방·특수연맹 또는 지구연합회의 지도자 양성 계획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09. 11. 13.)

1. 승인신청 : 지방·특수연맹이나 지구연합회가 훈련업무를 위임 받아 개설할 때 지구연합회는 지방·특수연맹에 지방·특수연맹은 중앙훈련원에 훈련개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에 그 적부를 심사하여 개설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 승인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개요(기간, 장소, 인원계획)

나. 강사 명단

다. 기준일정표

2. 훈련개설 통보 : 중앙훈련원에서 개설하는 훈련은 지방.특수연맹에, 지방.특수연맹에서 개설하는 훈련은 지구연합회에 훈련개설 4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3. 14.)

제7조(수강신청 및 확정통보)

1. 수강신청

각종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훈련개설계획(훈련개설 통지서)에 정한 기일 내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 12. 12.)

2. 참가비의 부담

각급 훈련의 수강자는 수강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정의 참가비와 여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3. 수강 승인 및 확정통보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지방·특수연맹 훈련담당커미셔너 및 지구연합회 훈련담당 커미셔너)는 수강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훈

련개설 7일 전까지 수강자 확정통보와 함께 입소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 3. 14.)

제8조(수강자의 훈련의 평가)

1. 수강자에 대한 평가는 실기과목을 중심으로 훈련강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훈련과정 중에 실시하고 평가 기준 및 방법은 해당 훈련팀 교범에 의한다. (개정 19. 12. 18.)
2. 훈련의 평가는 수강자의 설문조사로 하고 훈련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19. 12. 18.)
3. (삭제 19. 12. 18.)

제9조(수료증의 발급) 각급 훈련을 수료한 자에게는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과 코스대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 3. 14.)
다만, 교수과정과 부교수과정은 세계연맹이 제정한 양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0조(수강의 포기와 취소) (개정 06. 12. 12.)

1. 훈련의 포기 : 수강 승인을 받은 자가 훈련을 포기할 수 있으나 훈련 개설 3일 전까지 훈련 포기서를 수강 신청 절차에 따라 훈련 개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훈련의 취소 : 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 중이라도 강사회의 협의를 거쳐 코스대장이 수강을 취소 또는 취소를 권유할 수 있다.
   가.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할 경우
   나. 훈련기간 중 영지를 무단이탈한 수강자
   다. 훈련기간 중 음주행위를 한 수강자
   라. 무단 결강 및 훈련기준에 미달한 수강자
   마. 스카우트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강자
   바. 기타 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강자

제11조(훈련 이수의 보류 및 수강의 보충) (개정 06. 12. 12.)

1. 수강자가 유고로 인하여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코스대장은 부대장과 협의하여 해당 과정이수를 보류하고 차기 훈련에서 미 이수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과정 이수가 보류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수에 수료하는 것으로 수료증을 작성하여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지방·특수연맹)이 보관 하였다가 과목 보충 후에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지방·특수연맹 훈련담당 커미셔너)이 수여한다. (개정 20. 3. 14.)
3. 보충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른 수강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훈련 결과보고)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가 지도자 훈련을 실시했을 때는 훈련 종료 후 10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구연합회는 지방·특수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특수연맹(지방·특수연맹 개설 훈련 포함)은 다음의 2, 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월말에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 3. 14.)

1. 훈련일정표 1부
2. 훈련강사 및 수강자 명단 1부
3. 수료증 발급대장 1부
4. 결산서 1부

제2장 지도자훈련

제13조(초급과정) 지도자훈련 초급과정은 단위대의 운영을 담당할 훈육지도자와 협조지도자를 위하여 2일간(15시간 이상)의 지도자 기초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06. 12. 12.)

1. 초급과정을 대상자에 따라 대장연수과정, 협조지도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업무의 관장 :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의 책임 아래 지방·특수연맹이나 지구연합회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3. 수강 대상자 : 당해 연도 등록을 필하고 지도자(훈육지도자, 협조지도자)로 봉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중급과정) 지도자훈련 중급과정은 지도자의 자질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2박 3일간(19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17. 2. 10.)

1. 업무의 관장 : 이 규정 13조 2항에 준한다.
2. 수강 대상자 : 당해 연도에 등록을 필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로 한다.
3. 훈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재 명의로 훈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는 훈육지도자 기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제15조(상급과정) 지도자훈련 상급과정은 지도자 훈련의 최고 수준의 과정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5박 6일간(60시간) 실시한다.

1. 업무의 관장 :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의 책임 아래 지방·특수연맹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2. 상급과정의 구분 : 상급과정은 다음과 같이 3부로 나누어 실시한다.
   가. 제1부 : 사전과제(제2부 과정 전에 부여되는 연구과제)
   나. 제2부 : 5박 6일간 훈련

다만, 이하 삭제 (개정 07. 12. 20.)

다. 제3부 : 2부 과정을 수료한 후 6개월간의 실무 경험

3. 수강 대상자 : 수강 대상자는 훈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스카우트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중급과정에 준하는 지도자훈련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수강 승인 및 1부 과제 부여 :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지방·특수연맹)은 입소 안내와 함께 사전과제를 수강 확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자는 사전과제를 2부 과정 입소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3. 14.)

5. 증서발급 : 이 훈련의 제3부 이수자에게는 본인의 신청과 소속 지방·특수연맹의 확인을 거쳐 세계연맹이 제정한 우드배지 증서를 총재와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 명의로 발급하며, 증서 수령자는 소정의 장구를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 3. 14.)

제3장 훈련팀훈련

제16조(부교수과정) 훈련팀 훈련 부교수과정은 지도자 훈련의 훈련강사 양성을 위하여 5박 6일간(50시간) 실시한다. (개정 06. 12. 12.)

1. 수강 대상자 : 참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지도자로서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11. 9. 22.)

가. 상급과정을 수료하고 5년 이상 경과된 지도자로서 우드배지 자격자 (개정 24. 5. 23.)

나.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참가신청 현재 5년 이상 계속 등록된 지도자

다. 3년 이상 단위대 훈육지도자(대장, 부대장)로 봉사한 지도자

라. 전문과정(종별과정 1종) 자격증 소지자 (개정 17. 2. 10.)

마. 지도자훈련 훈련강사로 중급과정 2회, 상급과정 1회 이상 봉사한 지도자
다만, 선 훈련 수료, 후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7. 2. 10.)

바. 전 마호의 훈련봉사 실적은 본 규정 제28조(훈련봉사 기준)에서 정한대로 타 훈련 실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중급과정 1회는 봉사하여야 한다.

2.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은 수강 대상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훈련 개설 7일 전에 승인서를 지방·특수연맹을 통하여 본인에게 안내한다. (개정 20. 3. 14.)

제17조(교수과정) 훈련팀 훈련 교수과정은 지도자 훈련의 훈련강사 양성을 위하여 5박 6일간(50시간) 실시한다. (개정 06. 12. 12.)

1. 수강 대상자 : 참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지도자로서 지방 · 특

수연맹 치프커미셔너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11. 9. 22.)
가. 훈련부교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경과된 지도자 (개정 13. 12. 19.)
나.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참가신청 현재 10년 이상 계속 등록된 지도자
다. 5년 이상 단위대 훈육지도자(대장, 부대장)로 봉사한 지도자
라. 훈련부교수 자격을 취득하고 종별과정 1종 이상 이수한 지도자
마. 훈련부교수 자격 취득 후 지도자훈련 훈련강사로 중급과정 1회, 상급과정 1회 이상 봉사한 지도자. 다만, 선 훈련 수료, 후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7. 2. 10.)
바. 잼버리 또는 지방□특수연맹 캠퍼리에 1회 이상 봉사한 지도자 (개정 17. 2. 10.)

2. 수강 승인 :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은 수강 대상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훈련 개설 7일 전에 승인서를 지방연맹을 통하여 본인에게 안내한다. (개정 20. 3. 14.)

제4장 전문과정

제18조(커미셔너 과정) 제18조(커미셔너 과정) 커미셔너과정은 각급 조직의 커미셔너 양성을 위하여 12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인정)의 훈련과정을 실시한다.

1. 수강대상자 : 참가 신청 시 우드배지 자격 이상 소지자(부득이한 경우 중급과정을 이수한 지도자는 추후 우드배지 자격취득을 조건으로 신청가능)로서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8. 12. 13.)
2. 수강 승인 :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은 수강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시는 훈련개설 7일 전에 승인서를 지방·특수연맹을 통하여 본인에게 안내한다. (개정 20. 3. 14.)

제19조(종별과정) 종별과정은 지도자의 주요 기능향상을 위하여 15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18. 12. 13.)

1. 업무의 관장 : 지방·특수연맹 치프커미셔너의 책임 아래 지방·특수연맹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2. 종별과정의 종별 : 종별과정은 응급처치, 노래와 게임, 매듭법, 지도와 나침반, 야영법, 기타 대원들의 진급과정과 기능장과정 및 대활동에 필요한 과정 등으로 한다. (개정 17. 2. 10.)
3. 수강 대상자 : 당해 연도에 등록을 필한 지도자 (개정 17. 2. 10.)
4. 종별과정의 강사 자격은 타기관의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8. 12. 13.)

제19조의 1(종별강사과정) 종별강사과정은 종별과정의 훈련강사 양성을 위하여 30시간 이상 중앙훈련원 주관으로 실시한다. (신설 17. 2. 10.)

1. 수강 대상자 : 개설되는 동일 종별과정 수료자 (신설 17. 2. 10.)
2. 강사 자격증 발급 : 종별강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재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신설 17. 2. 10.)
3. 종별강사과정의 강사 자격은 타기관의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8. 10. 31.)

제20조(재훈련과정) 훈련팀의 수준유지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중앙본부가 제정한 훈련팀 교범에 의거 아래의 연수를 포함하는 재훈련 과정을 연간 수시로 실시하며, 훈련의 주관, 대상 등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훈련개설에 관한 일반사항은 중앙본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 12. 18.)

1. 연수회 및 연찬회(중앙&지방특수연맹 별) (신설 19. 12. 18.)
2. 세계연맹 성인자원정책 안내(On/Off-line) (신설 19. 12. 18.)
3. 국내 훈련정책 공유(Book) (신설 19. 12. 18.)
4. 훈련일정 안내(Website/SNS) (신설 19. 12. 18.)
5. 온라인 훈련뉴스(SMS) (신설 19. 12. 18.)
6. 지도자 훈련 규정 변경 안내(Mail Service) (신설 19. 12. 18.)
7. 기타 성인인력정책에 따른 연수 (신설 19. 12. 18.)

제5장 특별과정

제21조(대학 교과과정 운영)

1. 대학 교과목으로 초□중급과정을 운영할 경우 초□중급과정 이론과정을 강의 또는 원격연수로 수강하고, 초□중급과정 실기과정을 1박 2일 이상 야영 실습시간을 가져야 한다. (개정 17. 2. 10.)
2. 대학 교과목으로 상급과정 제2부를 운영할 경우 야영실습을 포함하여 최소 46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야영법, 대집회, 지도와 나침반, 개척물 제작, 하이킹, 스카우트 올림픽, 대영화제, 특별의식, 기타 야외 실습이 필요한 과목을 합하여 2박 3일 이상 야영 실습시간을 가져야 한다. (개정 06. 4. 12.)

제22조(교원 직무연수과정의 운용) (신설 06. 12. 12.)

①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을 교원 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초급과정과 병합하여 4일 이상(3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나. 연수의 운영은 중급과정에 준하여 운영 한다.

다. 중급과정을 훈육지도자자격연수로 연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원직무연수는 해당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마 교원직무연수과정 이수자에게는 중급과정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상급과정

가. 상급과정을 교원 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60시간 이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 연수의 운영은 상급과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다. 상급과정을 야영지도자자격연수로 연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원직무연수는 해당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마. 교원직무연수과정 이수자에게는 상급과정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경영자 과정) (신설 06. 12. 12.)

① 경영자 과정은 육성단체대표나 단(대)위원장 등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앙훈련원 및 지방·특수연맹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운영은 중급과정에 준하되 필요한 과목과 진행방법은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지방·특수연맹 훈련담당 커미셔너)과 코스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 3. 14.)

② 경영자과정 이수자에게는 중급과정 이수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4조(입문과정 운영) (개정 06. 12. 12.)

① 초급과정의 내용으로 5시간 내외의 입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대상자는 스카우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로 한다.

제25조(훈련의 병합 및 분할 운영) 훈련을 대상이나 시기, 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병합 또는 분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7. 12. 20.)

① 초급과정(1박 2일)과 중급과정(2박 3일)을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정의 운영은 지도자 훈련 매뉴얼과 지침에 따른다.

② 중급과정을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박 2일은 야영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7. 12. 20.)

③ 상급과정을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박 3일은 야영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7. 12. 20.)

④ 훈련팀 훈련(부교수과정, 교수과정)을 분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7. 12. 20.)

제26조(사이버과정 운영) 초□중급과정 이론과정을 중앙훈련원 주관으로 사이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 2. 10.)

제6장 훈련봉사 기록

제27조(봉사 실적의 인정)

1. 훈련강사의 봉사는 타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봉사실적으로 인정한다.

2. 같은 종류의 훈련에 시간강사로 해당 훈련의 일수와 동일한 횟수만큼 봉사한 실적은 해당 훈련의 전임강사 1회 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훈련강사로 봉사한 지도자에게는 코스대장 명으로 훈련 봉사증을 발급한다.

제28조(훈련 봉사 기준)

1. (삭제 11. 9. 22.)
2. (삭제 11. 9. 22.)
3. (삭제 11. 9. 22.)
4. 커미셔너과정 1회를 중급과정 1회로 산정 (개정 11. 9. 22.)
5. (삭제 11. 9. 22.)
6. 상급과정 1회를 중급과정 1회로 산정 (개정 11. 9. 22.)
7. 종별과정 1회를 중급과정 1회로 산정 (개정 11. 9. 22.)
8. (삭제 13. 12. 19.)
9. (삭제 11. 9. 22.)
10. (삭제 11. 9. 22.)

제29조(지침) (신설 06. 12. 12.)

1. 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훈련원 지침에 따른다.
2. 중앙훈련원 지침은 중앙치프커미셔너와 사무총장,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 3. 14.)

제7장 훈련지원

제30조(지도자훈련 지원) (삭제 24. 5. 23)

(별표 1) 훈련 강사의 자격

훈련종별	전 임 강 사		
	코스대장	부대장 및 상담강사	일반강사
초급과정	훈련부교수 이상	훈련부교수과정 이수자이상	우드배지 이상
중급과정	〃	〃	〃
상급과정	훈련교수	훈련부교수과정 이수자 이상	〃
훈련부교수과정	〃	훈련부교수 이상	훈련부교수과정 이수자 이상
훈련교수과정	〃	훈련교수	훈련교수과정 이수자 이상
커미셔너과정	〃	훈련부교수 이상	훈련부교수 과정이수자 이상
종별과정	〃	훈련부교수과정 이수 이상 또는 해당과정을 이수한 기능강사 자격자(개정 17. 12. 14.)	
종별 강사과정	〃	훈련부교수과정 이수 이상 또는 해당과정을 이수한 기능강사 자격자(신설 17. 12. 14.)	
재훈련과정	〃	훈련부교수 이상	훈련부교수 과정이수자 이상

※ 기능과목 강사는 기능과정 강사 자격자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시간 강사는 각 훈련과정의 일반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특별과정 전임강사는 개설되는 훈련과정의 기준에 따른다.

※ 커미셔너과정과 종별과정은 일반강사로만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7. 2. 10.)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0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7. (경과규정) 이 규정의 제16조 1항 가. 의 규정에 대하여 2013. 12. 19.일에서 2017.12. 14.일 사이에 지도자훈련 상급과정을 수료한 지도자는 상급과정을 수료한지 5년이 경과되고 우드배지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8.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9. 이 규정은 2024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